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실제 운영 상황에 맞게 조문을 정비
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으로 규정했던 사항을 조례에 명시

(신설)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안 제9조의2)

금연지도원의 활동 및 지원(안 제9조의3)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보 및 시”를 “구미시 시보 및”으로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관련 각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 주유소 경계선

안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소 : 금연구역 표지가 표시된 구역

제9조제3항 중 “제9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를 따른다”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서를 확인 및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관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3(금연지도원의 활동 및 지원)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관할구역 외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시설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연지도원은 별지 제7호서식을 발급받아 관계인에게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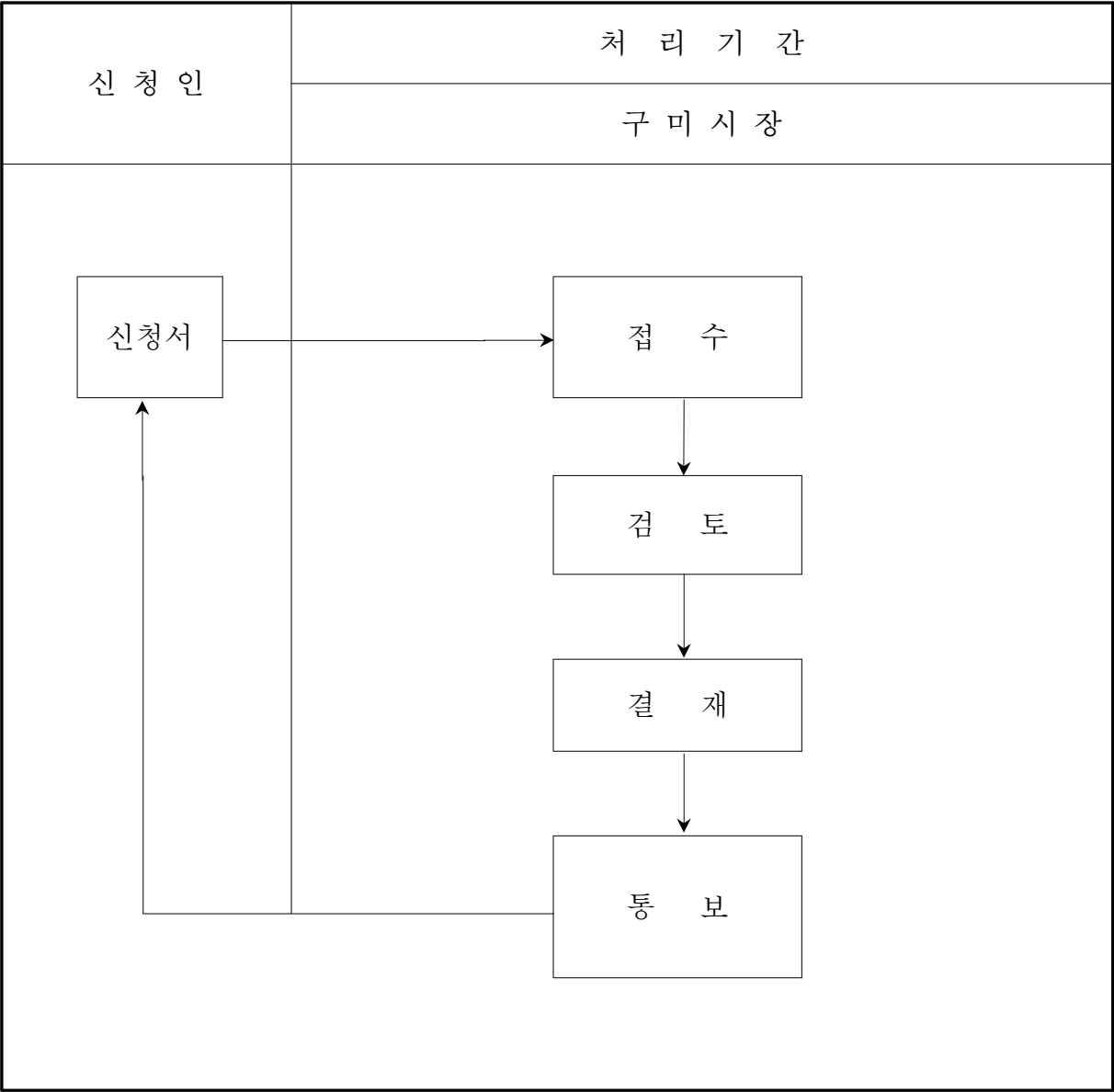
(서명)

구미시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명 (한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

발행번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고 (신규/해임)

제 20 - 호

금 연 지 도 원 위 촉 장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직인

■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제 호 금연지도원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구미시장 60mm×90mm
(색상 : 연파랑)
(뒤 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위 사람은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 000-000-0000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m ² or 플라스틱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 속 (단 체 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9조의3 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관련 각 시설

② (생 략)

③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9조(금연지도원) ①·② (생 략)

③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 주유소 경계선 안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 금연구역 표지가 표시된 구역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구미시 시보 및 -----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9조(금연지도원)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를 따른다.

제9조의2(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서를 확인 및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관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3(금연지도원의 활동 및 지원)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관할구역 외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시설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연지도원은 별지 제7호서식을 발급받아 관계인에게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

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

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 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소 관 부 서		건강증진과
입 안 자	과 장	이 명 희
	담 당	이 은 주
	담 당 자	박 수 현 (480-4055)